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제출년월일 : 1993.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대통령령 제13790호('92. 12. 26)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심의대상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현행제도의 기능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설계심의대상금액을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를 →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로 개정.
-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50인이내 → 80인이내로 개정.
- 공무원의 위원수를 7인 → 12인으로 개정.
- 회의개의를 3분의 2이상 출석 → 과반수출석으로 개정.
-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5인이상 10인이내 → 7인이상 12인이내로 개정.

□ 기타참고자료 : 별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발췌)
- 현행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문)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50인이내”를 “8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7인”을 “12인”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9조 제1호중 “시행하는 총공사의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동조 제2호중 “공사로서”를 “건설공사로서”로 하고,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으로서”를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한다.

동조 제3호중 “제1호에 해당하는”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5천만 원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를 “1억원이상인 공사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제95조의 3. 제3항의”를 “제112조 제5항의”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각 분야별”를 “분야별”로, “구성할수”를 “구성하여 운영할수”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위원5인이상 10인”을 “위원회의 위원 7인이상 12인”으로 한다.

동조 제3항중 "위원은"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동조 제4항중 "위원장은"을 "위원은"으로 한다

제15조중 "직원이 아닌"을 "①도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한다.

동조 제2항신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④소위원회 <u>위원장은</u>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p> <p>제15조 (출석수당등) <u>직원이 아닌</u> 위원 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위원장…………… …………… ……………</p> <p>제15조 (출석수당등) ①<u>도소속 공무원이 아닌</u>…………… …………… …………… ……………</p> <p>②<u>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수 있다.</u></p>